

결의안 20-112호

**코로나19과 그의 관련된 합법적인 목적으로
글렌데일 비상사태권한에 의거하여
연회장과 관련된 비상사태명령을 인가한
캘리포니아 글렌데일 시의회 결의안**

국제적, 국가적, 주정부, 지방정부 보건국과 정부기관은 신종(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로 발생한 중증 급성 호흡기 질환인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 2019 (코로나19)로 인한 호흡기 질환의 발병에 대응하고 있다. 바이러스의 증상은 발열, 기침, 호흡곤란이며, 감염자는 가벼운 병에서 중증질환과 사망까지 다양한 결말을 겪었다.

2020년 3월 4일,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추가적 자원을 사용할 목적으로, 다수의 주정부 기관과 부서에서 이미 시행 중인 비상사태 조치를 공식화하였으며, 주정부는 코로나19의 광범위한 확산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 비상사태를 선포하였다.

2020년 3월 4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감독이사회와 공공보건국은 국가 전역에 코로나바이러스의 늘어난 확산에 대응하여 지방 비상사태와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였다. 글렌데일 시의회는 배달과 테이크아웃을 제외하고 식당에서 식사하는 서비스를 단계 한 카운티의 재택대피령과 일치하는 결의안 20-29호를 채택하였다.

2020년 3월 13일, 미합중국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였고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연방정부는 비상사태 기금을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사용할 것을 발표하였다.

2020년 3월 16일, 글렌데일 시의회는 글렌데일 지방법 2.84장에 따라 지역 비상사태 시행을 선포하였고 카운티의 재택대피령과 일치하여 식당의 식사 서비스를 전부 단계 한 결의안 20-29호를 채택하였다.

2020년 5월 15일, 글렌데일의 결의안 20-29호는 - 식당, 술집, 나이트클럽 등과 관련 - 만기되었고 그 업소와 영업은 카운티의 재택대피령으로 계속 규제한다.

2020년 5월 26일경에 카운티 규정에 부합하면 식당 내 식사서비스를 위한 식당과 가게 내부의 쇼핑서비스를 위한 소매점에 대해 부분적인 재개를 허가하도록 재택대피령을 수정하였다.

2020년 5월 29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재택대피령의 수정안과 일치하여 글렌데일 결의안 20-29호는 일부분 폐지되었고, 카운티 규정에 부합하면 식당에서 식사서비스를 제공해도 되지만, 연회장에서 대규모 모임은 닫은 채로 있다.

2020년 7월 1일, 개빈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를 포함하여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최근 늘어난 19개 카운티의 식당과 실내 업소에 대해 두번째로 폐쇄를 명령하였다.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보건국장은 동일한 명령을 내렸다.

커뮤니티 확산으로 확진자 수가 현저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코로나19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 무증상이거나 가벼운 증상이 있고, 그들은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는 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로스앤젤레스 보건관은 카운티에서 사회적 모임을 계속 금지하고 있다.

글렌데일 시는 코로나19로 발생한 경제적 피해에 대응하여 지역 경제에 직접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있고, 시에서 지역업소를 지원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으며, 권고안 중에서 연회장을 알프레스코 식사의 시행을 포함한다.

공중보건명령으로 시에서 연회장의 운영 등 특정한 경제활동이 심각하게 방해받았다.

연회장을 식당용으로 임시로 개조하려면 공중보건명령을 따라야하며 식당영업을 하기 위해 활동을 중단한 연회장을 임시로 사용하는 것을 규정으로 허용하게 된다.

글렌데일 시정부법 2.84장에 의거한 공권력으로, 비상사태서비스 국장은 알프레스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비상사태 공공명령을 발령하였다.

글렌데일 시의회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항. 비상사태 공공명령 11호는 이에 인가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A. 글렌데일 시법령 30.70.308항에 정의된 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업소영업을 바꾸고 식당으로 운영하기 위해 영업을 바꾸기 위한 임시 수용인원 허가증이 필요한 연회장에 대해, 임시 수용인원증에 따라 임시사용을 위한 허가증 신청서 수수료는 면제된다.

- **임시 수용인원 허가증 - 야외식사를 위한 개인주차장의 사용 요청에 필수 :** 수수료는 한시간에 166달러이다. 보통 부과된 시간은 3.5시간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의 결과로 면제를 신청하는 연회장은 수수료를 면제한다.
 - 이 면제는 2020년 12월 30일까지 유효하다.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공중보건관, 글렌데일 시의 공중보건명령이나 규정을 위반하는 모임, 실내 식사, 사회적 거리두기, 얼굴 가리개에 관한 것을 포함하나 국한되지 않는 것으로 업소나 개인이 연회장이거나 식당을 운영해도 된다고 이 명령을 해석하지 않고 해석하면 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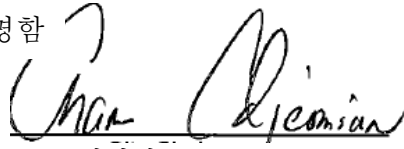
2항. 이 공공명령이나 적용이 정당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이 무효라고 판결하는 경우, 그러한 무효판결은 무효한 조항이나 적용없이 유효한 명령이나 이 결의안의 관, 항,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것으로 각각 구절, 항, 문장, 혹은 단어는 분리할 수 있다고 공언한다.

3항. \$1,000을 초과하지 않는 벌금이나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수감형으로 규정한 글렌데일 지방법 1.20장에 의거하여 상기 공공명령의 위반을 시 검찰청에 회부한다. 경찰관은 각자 재량으로 이 명령을 집행하고 명령의 의도를 항상 유념한다. 위반사항은 글렌데일 지방법원 1.24장의 조항으로 집행되며, 이에 규정된 집행절차와 함께, 첫 소환장은 \$400의 벌금, 두번째 소환장은 \$1,000의 벌금, 세번째 소환장은 \$2,000의 벌금으로 규정한다.

4항. 이 결의안과 해당 명령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나 캘리포니아 주가 규정한 더 엄격한 제한사항을 대신하지 않는다.

2020년 7월 21일 글렌데일 시의회가 채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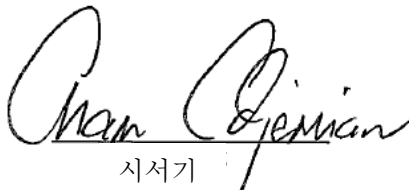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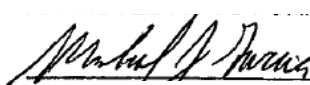
증명함

시서기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SS.
글렌데일 시)

본인, 아람 아제미안 글렌데일 시 서기는 전술한 결의안 20-112호를 2020년 7월 21일에 개최한 정기회의에서 캘리포니아 글렌데일 시의회가 채택하였고 동일한 내용이 다음 투표로 채택되었음을 이에 인증한다.

찬성: 브롯맨, 드바인, 카사키안, 나자리안, 아가재니안
반대: 없음
결석: 없음
기권: 없음


시서기

양식을 승인함

시검사
날짜 7/21/2020